

3000 경제개발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 3320 치수및재해대책 3321 하천관리 110 인건비 101 인건비

과 목	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세항	세세항	목				
3321 하천관리			12,689,027	4,620,820	8,068,207	[국 6,222,962 도 1,806,199 시 39,046 ]
	100	경상예산	345,320	345,320	0	
	110	인건비	240,777	219,777	21,000	
	101	인건비	240,777	219,777	21,000	
			240,777	219,777	21,000	10 일시사역인부임 ○하천부지실태조사 인부임 50,000원 * 30일 * 14명 = 21,000
	120	경상적경비	104,543	125,543	△21,000	
	201	일반운영비	102,543	123,543	△21,000	
			102,543	123,543	△21,000	01 일반운영비 ○국가하천부지 측량 위탁 수수료 0원 - 기정 21,000,000원 = △21,000
	200	사업예산	12,343,707	4,275,500	8,068,207	[국 6,222,962 도 1,806,199 시 39,046 ]
	210	보조사업	10,247,207	1,799,000	8,448,207	[국 6,222,962 도 1,806,199 시 419,046 ]
	401	시설비및부대비	10,187,207	1,799,000	8,388,207	[국 6,222,962 도 1,776,199 시 389,046 ]
			10,036,207	1,769,000	8,267,207	01 시설비 ○화포천(장재제, 효동제)정비공사 500,000,000원 = 500,000 [도 500,000 ] ○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(과목변경)

3000 경제개발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 3320 치수및재해대책 3321 하천관리 210 보조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

과 목	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세항	세세항	목				
						140,000,000원 - 기정 200,000,000원 = △60,000
						[도 △30,000 시 △30,000 ]
						[ 기정 도 100,000 시 100,000 ]
						○금곡천 수해복구공사 68,154,000원 = 68,154
						[국 57,030 도 11,124 ]
						○무계천 수해복구공사 60,242,000원 = 60,242
						[국 42,434 도 8,276 시 9,532 ]
						○대청천 수해복구공사 61,769,000원 = 61,769
						[국 41,523 도 8,098 시 12,148 ]
						○내삼천 수해복구공사 68,492,000원 = 68,492
						[국 46,042 도 8,980 시 13,470 ]
						○진례천(1공구) 수해복구공사 85,072,000원 = 85,072
						[국 60,325 도 11,766 시 12,981 ]
						○대포천(1공구) 수해복구공사 71,873,000원 = 71,873
						[국 60,143 도 11,730 ]
						○주중천(1공구) 수해복구공사 52,245,000원 = 52,245
						[국 35,120 도 6,850 시 10,275 ]

3000 경제개발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 3320 치수및재해대책 3321 하천관리 210 보조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

과 목	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세항	세세항	목				
						○주중천(2공구) 수해복구공사 53,110,000원 = 53,110 [국 35,702 도 6,963 시 10,445 ]
						○주중천(3공구) 수해복구공사 105,100,000원 = 105,100 [국 70,651 도 13,780 시 20,669 ]
						○사촌천(4공구) 수해복구공사 64,215,000원 = 64,215 [국 43,166 도 8,420 시 12,629 ]
						○사촌천(3공구) 수해복구공사 51,935,000원 = 51,935 [국 34,912 도 6,809 시 10,214 ]
						○사촌천(2공구) 수해복구공사 50,982,000원 = 50,982 [국 34,271 도 6,684 시 10,027 ]
						○사촌천(1공구) 수해복구공사 82,036,000원 = 82,036 [국 65,462 도 12,768 시 3,806 ]
						○예안천 수해복구공사 68,160,000원 = 68,160 [국 45,819 도 8,936 시 13,405 ]
						○대포천(2공구) 수해복구공사 83,354,000원 = 83,354 [국 56,033 도 10,928 시 16,393 ]
						○소감천 수해복구공사 333,601,000원 = 333,601

3000 경제개발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 3320 치수및재해대책 3321 하천관리 210 보조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

과 목	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 출 기 초
세항	세세항	목				
						[국 239,312 도 46,675 시 47,614 ]
						○대포천(4공구) 수해복구공사 51,812,000원 = 51,812
						[국 34,829 도 6,793 시 10,190 ]
						○사촌천(6공구) 수해복구공사 77,850,000원 = 77,850
						[국 52,333 도 10,207 시 15,310 ]
						○유하천(1공구) 수해복구공사 52,982,000원 = 52,982
						[국 44,335 도 8,647 ]
						○조만강 수해복구공사 5,775,771,000원 = 5,775,771
						[국 4,833,618 도 942,153 ]
						○진례천(2공구) 수해복구공사 55,771,000원 = 55,771
						[국 37,491 도 7,321 시 10,959 ]
						○설창천 수해복구공사 40,310,000원 = 40,310
						[국 33,731 도 6,579 ]
						○해반천 수해복구공사 104,590,000원 = 104,590
						[국 86,837 도 16,936 시 817 ]
						○무릉천 수해복구공사 76,611,000원 = 76,611
						[국 51,499 도 10,045 시 15,067 ]

3000 경제개발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 3320 치수및재해대책 3321 하천관리 210 보조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

과 목	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 출 기 초
세항	세세항	목				
						○용덕천 수해복구공사(30m) 32,340,000원 = 32,340 [도 12,936 시 19,404 ]
						○신어천(1공구) 수해복구공사(100m) 33,319,000원 = 33,319 [도 13,328 시 19,991 ]
						○주중천(4공구) 수해복구공사(30m) 28,195,000원 = 28,195 [도 11,278 시 16,917 ]
						○사촌천(8공구) 수해복구공사(100m) 7,937,000원 = 7,937 [도 3,175 시 4,762 ]
						○사촌천(7공구) 수해복구공사(100m) 1,100,000원 = 1,100 [도 440 시 660 ]
						○사촌천(5공구) 수해복구공사(300m) 39,750,000원 = 39,750 [도 15,900 시 23,850 ]
						○여차천 수해복구공사(40m) 22,920,000원 = 22,920 [도 9,168 시 13,752 ]
						○내동천 수해복구공사(15m) 18,265,000원 = 18,265 [도 7,306 시 10,959 ]
						○대포천(3공구) 수해복구공사(55m) 14,850,000원 = 14,850

3000 경제개발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 3320 치수및재해대책 3321 하천관리 210 보조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

과 목	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 출 기 초		
세항	세세항	목						
						[도 5,940 시 8,910 ]		
						○신어천(2공구) 수해복구공사(322m)	19,887,000원 =	19,887
						[도 7,955 시 11,932 ]		
						○화포천 수해복구공사(20m)	12,607,000원 =	12,607
						[도 5,043 시 7,564 ]		
			106,000	0	106,000	02 감리비		
						○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감리비	106,000,000원 =	106,000
						[국 70,384 도 14,246 시 21,370 ]		
			45,000	30,000	15,000	03 시설부대비		
						○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시설비대비	15,000,000원 =	15,000
						[국 9,960 도 2,016 시 3,024 ]		
		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	60,000	0	60,000	[도 30,000 시 30,000 ]		
			60,000	0	60,000	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		
						○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(한림배수장)	60,000,000원 =	60,000
						[도 30,000 시 30,000 ]		
		220 자체사업	2,096,500	2,476,500	△380,000			
		401 시설비및부대비	1,849,000	2,379,000	△530,000			

3000 경제개발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 3320 치수및재해대책 3321 하천관리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

과 목	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 출 기 초
세항	세세항	목				
			1,779,000	2,309,000	△530,000	01 시설비
						○도시하천 정비사업 (=500,000)
						-대청천.율하천 정비 0원 - 기정 500,000,000원 = △500,000
						○춘추계 하천기성제 정비사업
						670,000,000원 - 기정700,000,000원 = △30,000
	403	자치단체등자본이전	190,000	40,000	150,000	
			190,000	40,000	150,000	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
						○강동배수장 예비선로 인입공사(특별교부세) 150,000,000원 = 150,000